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제709호 2013.07.05.(금)

발행인: 아산시장  
편집·보급: 홍보실  
전화: ☎540-2811  
<http://www.asan.go.kr>  
아산시 시민로 456(은천동1626)  
우)336-701

# 아산시보

## 시보게재 요청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시보 게재내용은 전산망을 통하여 반드시 발행일 3일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시보 게재문의 : 전화 540-2811, FAX 540-2162
- 시보 발행일 : 매월 5일, 15일, 25일
- 시보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아산시 홈페이지」 → 「행복시정」 → 「시정소식」 → 「아산시보」 게재



# 【 계 재 순 서 】

## 입 법 예 고

- 제2013-950호(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

## 고 시

- 제2013-179호(신조 공인 등록 고시공고)----- 14
- 제2013-181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5
- 제2013-182호(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
- 제2013-184호(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고시)----- 20
- 제2013-185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26
- 제2013-186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27
- 제2013-187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28
- 제2013-188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29

## 공 고

- 제2013-896호(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공고)----- 30
- 제2013-904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재열람공고)----- 34
- 제2013-909호(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38
- 제2013-913호(2013년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48
- 제2013-917호(공유토지분할 공시송달)----- 52
- 제2013-938호(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53
- 제2013-939호(도로지정공고 [최은숙])----- 54
- 제2013-949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등 반송건 공시 송달 공고)----- 55
- 제2013-955호(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공고)----- 57
- 제2013-956호(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공고)----- 58

아산시 공고 제 2013-950 호

##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 안전행정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전국 3,400여개 읍면동 중 총 31개 읍면동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 중 아산시 탕정면이 선정됨에 따라,
- 이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모델 창출과 개별 조례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총칙 (안 제1조 ~ 제5조)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 제15조)
  -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운영
- 주민자치회 위원 (안 제16조 ~ 제20조)
  -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위원의 임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안 제21조 ~ 제 2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보칙 (안 제23조 ~ 제24조)
  - 감독, 운영규정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아산시청(자치행정과, 새마을팀)
    - 주소 : (우)336-701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온천동, 아산시청)
    - 전화: (041)540-2251 팩스: (041)540-2349

붙임 :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아산시 조례 제 호

#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 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협의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 및 제10조에 의한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협의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 2. 수탁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 3. 주민자치회 관련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1. 지역대표위원 : 이·통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 2.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
- 3.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이내
2. 이·통장 협의회 추천위원 3명 이내
3.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당정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당정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산시공고 제2013 - 179호

공 고 문

아산시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등록 일자 : 2013. 06. 26.
- 2. 등록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신조 공인
- 3.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민원실 아산시 온양3동장인전용 - 종	훈민정음체(진하계) 정방형 (2.1cm×2.1cm)	
민원실 아산시 온양3동장인전용 - 횡	훈민정음체(진하계) 정방형 (2.1cm×2.1cm)	
아산시장인 온양3동민원용 - 종	훈민정음체(진하계) 정방형 (2.4cm×2.4cm)	
아산시장인 온양3동민원용 - 횡	훈민정음체(진하계) 정방형 (2.4cm×2.4cm)	

2013. 06. 25.

아 산 시 장



아산시 고시 제2013-18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 아산시 풍기동 118-4번지 일원에 아산경찰서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118-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2) 명 칭 : 아산경찰서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전체면적 : 38,867㎡
- 기 시 행 : 16,484㎡
- 금회시행 : 22,38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경찰청장 이성환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군동 209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있음)

- 기 정 : 2006년 2월 ~ 2009년 6월 30일
- 변 경 : 2006년 2월 ~ 2014년 6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신 청 면 적		소 유 주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1	아산 시 풍기 동	323-1	대	16,484	16,484		국(경찰청)	
2		121-1	답	94		94	국(경찰청)	
3		121-3	답	36		36	국(경찰청)	
4		122	답	2,662		2,662	국(경찰청)	
5		123-3	답	1,103		1,103	국(경찰청)	
6		125-6	답	82		82	국(경찰청)	
7		309	답	334		334	국(경찰청)	
8		310-1	전	1		1	국(경찰청)	
9		310-8	전	27		27	국(경찰청)	
10		311	답	123		123	국(경찰청)	
11		312	전	30		30	국(경찰청)	
12		313-1	답	911		911	국(경찰청)	
13		313-2	답	493		493	국(경찰청)	
14		314-1	답	771		771	국(경찰청)	
15		315-5	답	255		255	국(경찰청)	
16		319-2	답	276		276	국(경찰청)	
17		320	답	102		102	국(경찰청)	
18		321	답	208		208	국(경찰청)	
19		322	답	3,033		3,033	국(경찰청)	
20		323	답	2,640		2,640	국(경찰청)	
21		324-1	답	2,509		2,509	국(경찰청)	
22		324-4	답	5,076		5,076	국(경찰청)	
23		324-8	답	255		255	국(경찰청)	
24		404-3 2	구	833		833	국(경찰청)	
25		417-1	도	498		498	국(경찰청)	
26		422-1 6	도	31		31	국(경찰청)	
1차년도 계		1 필 지		38,867	16,484			
2차년도 계		25 필 지				22,383		
합 계		26 필 지		38,867	38,867			

아산시 고시 제2013 - 182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아산시 풍기동, 읍내동 일원 외암대로(대로3-5)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한 아산시 도시관리 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항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5일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별항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도로)

##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	25	간선 도로	4,387	3호 광장	비도시 중로2-4	일반 도로	-	1968. 10.22.	
변경	대로	3	5	25	간선 도로	4,387	3호 광장	비도시 중로2-4	일반 도로	-		

##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5	대로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면발생 및 우회전 개설에 따른 도로면적 변경</li> <li>-당초: 109,675㎡ → 111,123㎡ (증 1,448㎡, 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암대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면발생과 교차로 우회전 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li> </ul>

## 2. 공간시설(공원)

## 가.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온주 역사공원	역사공원	읍내동 산10-1 일원	160,950	감)1,128	159,822	

## 나.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온주 역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축소</li> <li>-당초: 160,950㎡ → 159,822㎡ (감 1,128㎡ 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암대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면 발생부분을 도로로 편입함</li> </ul>

## 다. 온주역사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조서

구 분	시 설 내 용	시설면적(m <sup>2</sup>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60,950	감)1,128	159,822	
기반시설	도 로	5,426	-	5,426	
조경시설	연 못	1,980	-	1,980	
휴양시설	휴 게 쉼 터	100	-	100	
교양시설	아산역사마당	1,980	-	1,980	
	봉 화 대	340	-	340	
편익시설	전 통 관	4,330	-	4,330	
	전 망 대	2,470	-	2,470	
관리시설	아 산 제 1 문	780	-	780	외암대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면발생 위치변경
	주 차 장	3,570	-	3,570	
녹	지	139,974	감)1,128	138,846	외암대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면발생 부분 제척

아산시 고시 제2013 - 184호

## 2012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제16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2013. 7. 2)된 2012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아 산 시 장



# I.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 □□ 총 결산 규모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A)	세입결산액(B)	세출결산액(C)	잉여금(D=B-C)
합 계	1,078,821,715,588	1,027,480,383,524	806,137,474,925	221,342,908,599
일반회계	835,930,361,558	843,455,686,931	677,683,707,575	165,771,979,356
특별회계	242,891,354,030	184,024,696,593	128,453,767,350	55,570,929,243

○ 잉여금(221,342,908,599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이 월 금 : 144,567,533,497원
- 명 시 이 월 : 47,299,471,630원
- 사 고 이 월 : 8,769,242,850원
- 계 속 비 이 월 : 88,498,819,017원
- 보조금 사용잔액 : 4,362,434,594원
- 순세계 잉여금 : 72,412,940,508원

## □□ 세입예산 결산 내용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078,821,715,588	1,075,859,325,974	1,027,480,383,524	6,381,025,870	41,997,916,580
일반회계	835,930,361,558	875,921,097,551	843,455,686,931	5,443,496,190	27,021,914,430
특별회계	242,891,354,030	199,938,228,423	184,024,696,593	937,529,680	14,976,002,150

## □□ 세출예산 결산 내용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078,821,715,588	806,137,474,925	144,567,533,497	128,116,707,166
일반회계	835,930,361,558	677,683,707,575	101,601,519,497	56,645,134,486
특별회계	242,891,354,030	128,453,767,350	42,966,014,000	71,471,572,680

## Ⅱ. 기금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합 계	15,222,050,787	8,815,399,194	4,703,407,430	19,334,042,551
채무상환기금	479,341,001	2,352,736,320	2,199,500,000	632,577,321
식품진흥기금	284,310,430	47,404,320	47,193,730	284,521,020
자활기금	1,049,307,917	55,231,151	0	1,104,539,068
노인복지기금	1,103,733,826	41,274,160	20,000,000	1,125,007,986
여성발전기금	723,323,825	73,349,556	0	796,673,38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491,437,970	648,317,120	29,031,730	1,110,723,360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1,300,000,000	47,894,180	47,894,180	1,300,000,000
농어업발전기금	4,743,543,338	1,353,613,907	0	6,097,157,245
재난관리기금	4,415,815,045	3,883,537,690	2,067,287,790	6,232,064,945
체육진흥기금	631,101,255	19,539,570	0	650,640,825
통합관리기금	136,180	292,501,220	292,500,000	137,400

### Ⅲ.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7,947,589,413	744,204,655	273,602,772	8,418,191,296
일반회계	7,589,646,205	733,544,755	203,912,192	8,119,278,768
특별회계	201,550,810	10,659,900	68,816,100	143,394,610
기 금	156,392,398	0	874,480	155,517,918

### Ⅳ. 채무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상 환 소 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97,345,200,000	300,000,000	18,421,300,000	0	79,223,900,000
일반회계	57,132,000,000	0	3,372,000,000	0	53,760,000,000
특별회계	40,213,200,000	300,000,000	15,049,300,000	0	25,463,900,000

### 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분 용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합 계	2,289,000,777,223	207,588,719,265	44,874,837,455	2,451,714,659,033	
행 정 재 산	계	2,251,846,162,442	192,195,676,376	40,048,319,311	2,403,993,519,507
	공 용	271,076,993,227	8,396,382,629	13,903,455,459	265,569,920,397
	공공용	1,979,213,841,315	152,758,293,747	26,144,863,852	2,105,827,271,210
	기업용	0	31,041,000,000	0	31,041,000,000
	보 존	1,555,327,900	0	0	1,555,327,900
일반재산	37,154,614,781	15,393,042,889	4,826,518,144	47,721,139,526	

## VI.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원)

전 년 도 말 액		당 해 연 도 증·감 내 역				당 해 연 도 말 액	
수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576	7,475,655,150	125	1,324,616,600	40	733,246,220	661	8,067,025,530

## VII. 재무보고서

### □□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원)

자 산		부채, 순자산	
유 동 자 산	298,578,647,854	부 채	200,336,155,590
투 자 자 산	21,284,354,096	순 자 산	3,736,577,587,382
고 정 자 산	3,611,698,401,606		
기타비유동자산	5,352,339,416		
계	3,936,913,742,972	계	3,936,913,742,972

- 20121231까지 총 자산은 3,936,913,742,972원이며 총 부채는 200,336,155,590원 이고, 순자산은 3,736,577,587,382원 임.

### □□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원)

총 수 익	798,621,722,624	총 비 용	596,318,368,297
		운영차액	202,303,354,327

- 2012회계연도의 총수익은 798,621,722,624원이며 총 비용은 596,318,368,297원 이고, 운영차액은 202,303,354,327원 임.

##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원)

1. 기 초 순 자 산	3,434,745,810,566
2. 운 영 차 액	202,303,354,327
3. 순 자 산 의 증 가	107,942,778,825
4. 순 자 산 의 감 소	8,414,356,336
5. 기말순자산(1+2+3-4)	3,736,577,587,382

- 기초순자산은 3,434,745,810,566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2,303,354,327원이고, 순자산의 증기분은 107,942,778,825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8,414,356,336원입니다. 2012년도 기말순자산은 3,736,577,587,382원임.

고시 제2013-185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04.

아 산 시 장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제2013 - 45호 (2013. 07. 04)		
공유수면의 종류	하천	소유자	국(건설교통부)
공유수면의 위치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93-2번지		
점용면적	26m <sup>2</sup>		
점용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실시계획인가 대상여부	인가 대상이 아님		
점용기간	2013. 07. 04. ~ 2022. 12. 31.		
점용자	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북길 33	
	성명	박노현	

고시 제2013-186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04.

아 산 시 장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제2013 - 45호 (2013. 07. 04)		
공유수면의 종류	하천	소유자	국(건설교통부)
공유수면의 위치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93-2번지		
점용면적	26m <sup>2</sup>		
점용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실시계획인가 대상 여부	인가 대상이 아님		
점용기간	2013. 07. 04. ~ 2022. 12. 31.		
점용자	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북길 33	
	성명	박노현	

고시 제2013-187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04.

아 산 시 장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제2013 - 45호 (2013. 07. 04)		
공유수면 의 종류	하 천	소 유 자	국(건설교통부)
공유수면의 위치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93-2번지		
점 용 면 적	26m <sup>2</sup>		
점 용 목 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실시계획 인가 대 상 여 부	인가 대상이 아님		
점 용 기 간	2013. 07. 04. ~ 2022. 12. 31.		
점 용 자	주 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북길 33	
	성 명	박 노 현	

고시 제2013-188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04.

아 산 시 장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제2013 - 42호 (2013. 07. 04)		
공유수면의 종류	구거	소유자	국(건설부)
공유수면의 위치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629-2번지		
점용면적	51m <sup>2</sup>		
점용목적	공장부지 진출입로		
실시계획인가 대상여부	인가 대상이 아님		
점용기간	2013. 07. 04. ~ 2022. 12. 31.		
점용자	주소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1 케이엘라인(주)	
	성명	이평순	

아산시 공고 제2013 - 896 호

##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공고

경찰대학 이전 부지에 주거지가 편입되어 이주단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 아래와 같이 이주택지를 공급 공고 합니다.

1. 공급 대상자 :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2. 공 급 방 법 :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명의로 수의계약 체결
3. 공급대상 토지 : 이주단지내 단독주택용지 33필지 20,498㎡

공급자	공급용도	필지수	면 적 (㎡)	공급예정 가격(천원)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높이
아산시	단독택지	32	370 ~ 660	59,200 ~ 105,600	자연녹지 지역	20%	80%	2층 이하
	마을회관	1	506	80,960				

※ 공급대상용지 상세내역은 분양용지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도서 참조

### 4. 추첨 및 필지 지정

가. 추첨일시 : 2013년 07월 17일(수) 15:00

나. 추첨장소 : 신창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추첨 일시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① 신분증 및 도장

②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상기의 각종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위치선정은 공급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추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5. 계약

가. 일 시 : 이주단지 착공 후

나. 장 소 : 아산시 신도시지원과(이순신종합운동장내 경찰대학 T/F팀 사무실)

다.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②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부 영수증 원본
  - 계약금 납부계좌 : 아산시 지정 금고(별도 안내)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체결일 이전에 공급대상자의 이름으로 입금한 후      입금증(사본) 또는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계약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대리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라. 유의사항

- ① 계약 안내문은 추후 계약대상자에게 별도 발송 합니다.
- ② 상기의 각종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대금납부방법

가. 대금납부방법

구 분	대금납부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납부일	계약체결시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토지소유권 등기 이전시
납부할 금액	분양금액의 10%	80%	10%

나. 위약금 및 연체료 등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택지 분양 계약서 약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 7.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의 90%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2013. 11. 1.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대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2014.04.31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 8.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용지를 타인에게 양도(전매,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9. 기타유의사항

가. 분양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 교통 등 각종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추첨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첨자가 지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조건 불비 등 자격 요건의 미비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 합니다.

마. 공급면적은 용지조성 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 측량 결과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 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바.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고저·토질<연약지반, 암반>·법면상태·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시설물(도로,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시설, 가로등, 공원 등)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경찰대학 이주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 내용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 내 주차장은 건축당시의 주차장법과 아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련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자. 개발계획승인도서 및 분양관련 도서는 아산시 신도시지원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기준(건폐율,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아산시 신도시지원과 ☎ 041-540-2067

2013. 07. 01.

아 산 시 장



아산시 공고 제2013-9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재열람공고**

- 1.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71-8번지 일원에 수해상습지개선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고기곡교 재가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7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호선, 중로3-3호선, 소로2-13호선, 중로2-3호선, 중로2-5호선)사업
- 2) 명 칭 : 도고기곡교 재가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 : 대로3-2호선, 중로3-3호선, 소로2-13호선, 중로2-3호선, 중로2-5호선

번호	구분	규모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1	결정	대로	3	2	25	중로 2-5	신언 구역계	2,315	27,467	1985. 12.28	건설부고시 제 1985-584호
	기시행							-	-		
	금회시행							237	5,955		
	미시행							2,078	21,512		
2	결정	중로	3	3	15	대로 3-2	소로 2-19	92	1,050	1986. 12.20	충남고시제1986-192호
	기시행							-	-		
	금회시행							44	498		
	미시행							48	552		
3	결정	소로	2	13	8	대로 3-2	중로 2-8	268	2,026	1977. 3.17	충남고시제1977-58호
	기시행							-	-		
	금회시행							16	117		
	미시행							252	1,909		
4	결정	중로	2	3	15	중로 2-5	대로 3-2	974	15,805	1977. 3.17	충남고시제1977-58호
	기시행							-	-		
	금회시행							130	1,775		
	미시행							844	14,030		
5	결정	중로	2	5	15	7호 광장	대로 3-2	524	7,935	1977. 3.17	충남고시제1977-58호
	기시행							-	-		
	금회시행							24	370		
	미시행							500	7,56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아산시장
- 2) 주 소 :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4년 12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사. 열람기간 : 실시계획열람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940)

□ 불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도고면 기곡리	159-3	답	719	480	현천숙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 1차우성아파트1-907			
2	“	272-4	구	171	168	농림수산부				
3	“	160-35	답	220	213	아산시				
4	“	271-8	도	55	55	국토해양부				
5	“	159-5	답	297	193	아산시				
6	“	333	도	21,332	2,170	아산시				
7	“	199-14	전	420	400	아산시				
8	“	199-12	도	44	44	국토해양부				
9	“	195-8	대	526	491	아산시				
10	“	196-23	잡	340	340	서정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90, 비-3003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한상덕	서울특별시강동구 상암로 251, 903-307			
11	“	196-15	잡	258	148	충청남도				
12	“	196-22	잡	478	42	충청남도				
13	“	196-14	잡	71	69	아산시				
14	“	196-21	잡	50	47	아산시				
15	“	196-18	천	4,835	93	재무부				
16	“	195-4	잡	78	77	아산시				
17	“	271-7	도	25	25	국토해양부				
18	“	195-11	잡	4	4	아산시				
19	“	271-14	도	11	11	국토해양부				
20	“	337-1	도	2,289	109	아산시				
21	“	333-1	도	137.8	137	아산시				
22	“	195-1	천	329	48	농림수산부				
23	“	195-3	도	1	1	국토해양부				
24	“	271-5	도	11	11	국토해양부				
25	“	271-75	천	48,603	1,118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6	도고면 기곡리	270-19	천	560	455	국토해양부				
27	“	270-69	대	7	7	아산시				
28	“	270-74	천	243	169	국토해양부				
29	“	270-79	대	117	117	신달우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270-18			
30	선장면 신성리	427-20	대	117	117	신달우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270-18			
31	“	240-16	답	88	88	신달우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270-18			
32	“	427-12	천	1,454	1,119	농수산부				
33	“	260-5	도	160	73	아산시				
34	“	445	도	1,306	74	국토해양부				
35	“	427-19	잡	2	2	신달우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270-18			
계				81,304	8,715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건물 소재지	지번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용도	구조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도고면 기곡리	270-18	일미 식당 1		25.1	최진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5-14	·안순천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59-6 ·서울종로연지동 136-74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선장면 신성리	427-11	일미 식당 본체		44.8			·안순천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59-6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14-4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식당 부역		8.6			·국(고양세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산시 공고 제2013-9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2-4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 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334-1번지 일원에 아산시와 신도시간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2-4호)사업 실시계획(변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아 산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334-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2-4호)사업
-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2-4호)개설사업

다. 사업의 개요(변경 있음)

- 당초 : L = 2,200m, B = 30 ~ 36m (면적 : 116,545㎡)
- 변경 : L = 996m, B = 30 ~ 36m(면적 : 46,390㎡)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아산직할사업단)
-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년 12월 ~ 2013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변경 있음)

사. 열람기간 : 실시계획열람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탕정면 갈산리	334-1	334-8	답	답	1,768	1,816	1,768	공	대한주택공사				
2	탕정면 갈산리	797-3	797-19	도	도	1,278	443	1,278	국	농림수산식품부				
3	탕정면 갈산리	363-1	363-5	도	도	188	221	188	공	아산시				
4	탕정면 갈산리	785-12	785-12	도	도	300	300	300	국	건설부				
5	탕정면 갈산리	363-3	363-3	답	답	295	295	295	공	대한주택공사				
6	탕정면 갈산리	332-1	332-1	답	답	1,261	1,261	1,261	공	대한주택공사				
7	탕정면 갈산리	363-2	363-2	답	답	21	21	21	공	대한주택공사				
8	탕정면 갈산리	362-2	362-2	전	전	6	6	6	공	아산시				
9	탕정면 갈산리		362-5		전	66		66	공	대한주택공사				
10	탕정면 갈산리	349-1	349-1	제	제	221	221	221	국	건설부				
11	탕정면 갈산리	785-3	785-3	도	도	67	67	67	국	건설부				
12	탕정면 갈산리	332-7	332-7	답	답	524	524	524	공	아산시				
13	탕정면 갈산리	350-1	350-1	제	제	73	73	73	국	건설부				
14	탕정면 갈산리	798-8	798-28	구	구	284	304	284	국	농림수산식품부				
15	탕정면 갈산리	362-3	362-3	전	전	31	31	31	공	아산시				
16	탕정면 갈산리	362-1	362-6	전	전	89	195	89	공	대한주택공사				
17	탕정면 갈산리	351-1	351-1	임	임	43	43	43	국	산림청				
18	탕정면 갈산리	785-9	785-9	구	구	1,183	38	38	국	농수산부				
19	탕정면	358-1	358-1	전	전	10	10	10	공	대한주택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갈산리													
20	탕정면 갈산리	330-1	330-1	답	답	2,073	2,073	2,073	공	아산시				
21	탕정면 갈산리	798-10	798-10	구	구	1,717	634	634	국	농림부				
22	탕정면 갈산리	286-5	286-8	답	답	1,550	1,606	1,550	공	대한주택공사				
23	탕정면 갈산리	286-1	286-6	답	답	442	451	442	공	대한주택공사				
24	탕정면 갈산리	797-15	797-21	도	도	222	223	222	국	농림수산식품부				
25	탕정면 갈산리	285-2	285-2	목	목	2,975	2,975	2,975	공	대한주택공사				
26	탕정면 갈산리	285-1	285-4	답	답	742	765	742	공	대한주택공사				
27	탕정면 갈산리	798-24	798-33	구	구	2	519	2	국	농림수산식품부				
28	탕정면 갈산리		798-32		구	465		465	국	농림수산식품부				
29	탕정면 갈산리	288-13	288-13	임	임	248	248	248	김선홍 외5인	천안시쌍용동1917				
30	탕정면 갈산리	292-1	292-1	답	답	210	210	210	공	대한주택공사				
31	탕정면 갈산리	784-13	784-13	천	천	120,856	1,387	1,387	국	건설부				
32	탕정면 갈산리	334-2	334-9	답	답	811	897	811	공	대한주택공사				
33	탕정면 갈산리	798-5	798-27	구	구	47	54	47	국	농림수산식품부				
34	탕정면 갈산리	332-2	332-12	답	답	1,204	1,291	1,204	공	대한주택공사				
35	탕정면 갈산리	332-11	332-11	창	창	100	100	100	공	대한주택공사				
36	탕정면 갈산리	332-3	332-13	창	창	99	136	99	공	대한주택공사				
37	탕정면 갈산리	332-4	332-14	답	답	1	6	1	공	대한주택공사				
38	탕정면 갈산리	332-9	332-9	답	답	2	2	2	공	아산시				
39	탕정면 갈산리	332-8	332-8	답	답	54	54	54	공	아산시				
40	탕정면 갈산리	330-8	330-16	전	전	28	30	28	공	아산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1	탕정면 갈산리	330-7	330-7	답	답	76	76	76	공	아산시				
42	탕정면 갈산리	330-4	330-15	창	창	5	6	5	공	대한주택공사				
43	탕정면 갈산리	330-6	330-6	답	답	25	25	25	공	아산시				
44	탕정면 갈산리	330-3	330-14	답	답	841	940	841	공	대한주택공사				
45	탕정면 갈산리	330-2	330-2	답	답	1,367	1,367	1,367	공	대한주택공사				
46	탕정면 갈산리	798-3	798-3	구	구	1,647	215	215	국	농림수산식품부				
47	탕정면 갈산리	286-3	286-3	답	답	1,537	1,537	1,537	공	대한주택공사				
48	탕정면 갈산리	286-2	286-2	목	목	1,498	1,498	1,498	공	대한주택공사				
49	탕정면 갈산리	286-4	286-7	답	답	105	164	105	공	대한주택공사				
50	탕정면 갈산리	308-2	308-7	전	전	22	31	22	공	대한주택공사				
51	탕정면 갈산리	308-1	308-6	잡	잡	2,502	2,548	2,502	공	대한주택공사				
52	탕정면 갈산리	798-25	798-34	구	구	257	272	257	국	농림수산식품부				
53	탕정면 갈산리	299-4	299-15	전	전	197	198	197	공	대한주택공사				
54	탕정면 갈산리	299-3	299-14	답	답	926	948	926	공	대한주택공사				
55	탕정면 갈산리		299-4		전	851		31	박봉순	217				
56	탕정면 갈산리		299-3		답	887		191	오숙자	서울시광진구구의동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2-102				
57	탕정면 갈산리	299-2	299-2	답	답	767	767	767	공	대한주택공사				
58	탕정면 갈산리	299-12	299-12	답	답	226	226	226	국	국토해양부				
59	탕정면 갈산리	299-1	299-13	답	답	2,216	2,431	2,216	국	국토해양부				
60	탕정면 갈산리	797-11	797-11	도	도	30	30	30	국	농림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1	탕정면 갈산리	296-7	296-7	답	답	44	44	44	국	국토해양부				
62	탕정면 갈산리	798-16	798-16	구	구	171	171	171	국	농림부				
63	탕정면 갈산리	292-5	292-8	답	답	248	267	248	국	국토해양부				
64	탕정면 갈산리	289	289-4	전	전	4,199	4,402	4,199	공	대한주택공사 외2인				
65	탕정면 갈산리	785-2		구			1,038		국	농림수산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탕정면 매곡리	1001-12	1001-12	천	천	26,395	4,195	4,195	국	건설교통부				
2	탕정면 매곡리	1022-8	1022-8	도	도	647	141	141	국	건설교통부				
3	탕정면 매곡리	884-1	884-1	천	천	1,138	122	122	국	건설교통부				
4	탕정면 매곡리	884	884	천	천	3,371	344	344	국	건설교통부				
5	탕정면 매곡리	885	885	천	천	2,797	97	97	국	건설교통부				
6	탕정면 매곡리	886	886	천	천	1,297	1,297	1,297	국	건설교통부				
7	탕정면 매곡리	893	893	전	전	1,815	198	198	국	건설교통부				
8	탕정면 매곡리	892-2	892-2	천	천	1,927	1,558	1,558	국	건설교통부				
9	탕정면 매곡리	894-2	894-2	천	천	2,142	389	389	국	건설교통부				
10	탕정면 매곡리	886-5	886-5	천	천	99	99	99	국	건설교통부				
11	탕정면 매곡리	891-5	891-5	천	천	301	301	301	국	건설교통부				
12	탕정면 매곡리	891-9	891-9	천	천	94	94	94	국	건설교통부				
13	탕정면 매곡리	936-7		답		845	187		김진섭	탕정면 매곡리 6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	탕정면 매곡리	936-1 4		답		218	218		국	국토해양부				
15	탕정면 매곡리	936-1 2		답		60	60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16	탕정면 매곡리	936-6		답		536	189	김진섭		탕정면 매곡리 640				
17	탕정면 매곡리	936-5		천		24	24		국	건설교통부				
18	탕정면 매곡리	935-4		천		206	135		국	건설교통부				
19	탕정면 매곡리	1049- 20		구		861	665		국	농림수산부				
20	탕정면 매곡리	935-1		답		3,463	3,463	박동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8까치마을 204-603				
21	탕정면 매곡리	924-2		답		1,455	352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탕정면 매곡리	924-1		답		2,215	2,215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23	탕정면 매곡리	1049		구		5,143	1,051		국	농림수산부				
24	탕정면 매곡리	1049- 12		구		5,008	247		국	농림수산부				
25	탕정면 매곡리	922-1		답		1,183	505		국	건설교통부				
26	탕정면 매곡리	499		과		2,588	2,428	김진성		탕정면 매곡리 578				
27	탕정면 매곡리	923-1		답		231	66		국	건설교통부				
28	탕정면 매곡리	513-2		답		33	33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29	탕정면 매곡리	497-1		답		1,402	308	이병학		탕정면 매곡리 807				
30	탕정면 매곡리	497-2		답		2,116	2,116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31	탕정면 매곡리	1049- 18		구		155	122		국	농림수산부				
32	탕정면 매곡리	476-2		답		1,653	1,052	김정상		아산시 풍기동 231 인정프린스@ 101-405				
33	탕정면 매곡리	937-1		답		3	3		국	건설교통부				
34	탕정면 매곡리	936-1 3		답		90	90		국	국토해양부				
35	탕정면 매곡리	937-4		답		2,303	74		국	국토해양부				
36	탕정면 매곡리	936-4		답		175	175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7	탕정면 매곡리	937-6		답		40	40		국	국토해양부				
38	탕정면 매곡리	936-3		답		862	862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39	탕정면 매곡리	936-2		답		968	968		장인숙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62-48 성문@4-607				
40	탕정면 매곡리	937		답		545	545		국	국토해양부				
41	탕정면 매곡리	936-1		답		843	843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42	탕정면 매곡리	1049- 21		구		32	32		국	농림수산부				
43	탕정면 매곡리	940-1		답		87	87		국	국토해양부				
44	탕정면 매곡리	1049- 23		구		847	292		국	농림수산부				
45	탕정면 매곡리	935-6		답		1,187	247		국	건설교통부				
46	탕정면 매곡리	935-2		답		1,548	1,548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47	탕정면 매곡리	935-5		답		1,133	1,133		국	국토해양부				
48	탕정면 매곡리	925-2		답		367	367		국	국토해양부				
49	탕정면 매곡리	925-1		답		269	269		국	국토해양부				
50	탕정면 매곡리	1049- 19		구		21	21		국	농림수산부				
51	탕정면 매곡리	1064		도		120	120		국	건설교통부				
52	탕정면 매곡리	500		답		1,090	1,090		국	국토해양부				
53	탕정면 매곡리	496-1		답		1,682	1,682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54	탕정면 매곡리	497-3		답		331	331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55	탕정면 매곡리	1063		도		339	112		국	건설교통부				
56	탕정면 매곡리	477		답		2,401	2,401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57	탕정면 매곡리	476-1		답		2,294	2,294		조인숙	탕정면 매곡리 588				
58	탕정면 매곡리	521		답		3,967	2,706		김병윤	탕정면 매곡리 596				
59	탕정면 매곡리	523-3		답		538	37		김병윤	탕정면 매곡리 59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0	탕정면 매곡리	523-6		답		11	11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61	탕정면 매곡리	523-2		답		2,622	103		백진철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577-1				
62	탕정면 매곡리	523-5		도		52	52		공	아산시				
63	탕정면 매곡리	1062		도		691	484		국	건설교통부				
64	탕정면 매곡리	1049- 17		구		269	259		국	농림수산부				
65	탕정면 매곡리	526-3		답		82	62		공	아산군				
66	탕정면 매곡리	526-5		답		102	63		공	아산시				
67	탕정면 매곡리	526-1		답		2,480	28		최성호	천안시 불당동 751 동일하이빌 202-201				
68	탕정면 매곡리	526-4		답		39	39		공	아산군				
69	탕정면 매곡리	526-6		도		32	32		공	아산시				
70	탕정면 매곡리	526-2		답		1,350	69		김중현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7,201호				
71	탕정면 매곡리	527-1		답		199	199		공	아산군				
72	탕정면 매곡리	527		과		3,818	2,589		김재봉	탕정면 매곡리 596				
73	탕정면 매곡리	244		과		3,947	2,747		한영섭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594-11				
74	탕정면 매곡리	1055		도		342	184		국	건설교통부				
75	탕정면 매곡리	252		답		3,947	2,704		공	대한주택공사				
76	탕정면 매곡리	251-1		답		1,564	1,564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77	탕정면 매곡리	256		답		3,247	2,081		전제천 외1인	천안시 청수동 183 극동@ 201-806				
78	탕정면 매곡리	257		답		2,896	2,896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79	탕정면 매곡리	255-2		답		1,404	167		김성도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76-5				
80	탕정면 매곡리	1053		도		611	92		국	농림수산부				
81	탕정면 매곡리	235-2		답		1,688	186		김봉환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675				
82	탕정면 매곡리	475		답		3,129	3,129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83	탕정면	475-2		답		907	58		국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매곡리													
84	탕정면 매곡리	474-2		답		1,139	129		국	국토해양부				
85	탕정면 매곡리	474		답		2,868	135		김상교	천안시 원성동 646-5				
86	탕정면 매곡리	1062-3		도		84	84		국	국토해양부				
87	탕정면 매곡리	1062-4		도		1,986	89		국	건설교통부				
88	탕정면 매곡리	1049-28		구		62	62		국	농림수산부				
89	탕정면 매곡리	1049-32		구		28,713	73		국	농림수산부				
90	탕정면 매곡리	472-4		답		38	17		공	아산군				
91	탕정면 매곡리	472-9		답		86	86		공	아산시				
92	탕정면 매곡리	528-5		답		26	26		공	아산시				
93	탕정면 매곡리	472-3		답		91	91		공	아산군				
94	탕정면 매곡리	528-4		답		231	16		국	국토해양부				
95	탕정면 매곡리	472-8		답		1,323	48		국	국토해양부				
96	탕정면 매곡리	472-1		답		1,799	14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97	탕정면 매곡리	528-1		답		169	169		공	아산군				
98	탕정면 매곡리	528		답		3,511	3,511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99	탕정면 매곡리	245		답		4,007	4,007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탕정면 매곡리	246		답		410	410		국	국토해양부				
101	탕정면 매곡리	251-2		답		2,433	2,433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102	탕정면 매곡리	250		답		1,211	1,211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103	탕정면 매곡리	257-1		답		44	44		국	국토해양부				
104	탕정면 매곡리	258		답		1,449	1,449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탕정면 매곡리	260-2		답		1,910	421		이창용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803				
106	탕정면 매곡리	260-1		답		212	57		이창용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80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7	탕정면 매곡리	259-2		답		405	107		이창용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803				
108	탕정면 매곡리	259-3		답		170	45		정순희	탕정면 매곡리 607				
109	탕정면 매곡리	259-1		답		733	133		윤필원	대전 서구 관저동 1137 구봉마을 512-203				
110	탕정면 매곡리	259-4		답		878	214		국	건설교통부				
111	탕정면 매곡리	259-9		답		167	83		국	국토해양부				
112	탕정면 매곡리	258-4		답		1,131	212		국	국토해양부				

아산시 공고 제2013 - 913호

###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아 산 시 장



- 1. 지원규모 : 24억원
- 2. 신청기간 : 2013. 7. 1 ~ 2013. 12월(자금 소진시까지)
- 3.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 1)

#### 4.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특례보증
  - \* 사업개시 6개월 이내, \*\* 사업개시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의미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1회에 한함)
-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041)530-3800
- 특례보증 우대조건
  - 보증비율 :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수수료 : 연 1.0%고정 (신용등급 관계없이)
  - 보증심사 완화 : 간이심사 기준표 적용

○ 보증기간 : 최장 5년 이내

○ 자금대출 :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 및 심사, 신용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 후 시중은행 등으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서 정한 금융회사에서 대출 실행

5.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041)530-3800

○ 보증 상담시 신청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6. 기타사항

○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 문의처 : 아산시 경제과 ☎540-2866

붙임 1)

## 201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비고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신규
46102 중	담배 중개업	-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
46331	주류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신규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신규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신규
47221 중	주류 소매업	신규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신규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신규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신규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신규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
561 중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차장 면적 포함)	변경
5621	주점업 단, 기타주점업(56219)은 생계형 지원가능	변경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신규
58211, 58219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신규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신규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표준산업분류	업종	비고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신규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
71520	지주회사	신규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신규
731	수의업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홍신소 등)	신규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신규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신규
86	보건업	-
91113	경주장 운영업	신규
91121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신규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신규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
91241 중	복권 판매업	신규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신규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신규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중),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용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용자 허용)

## 공 시 송 달

공고 제 2013- 91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 07. 01 ~ 2013. 07. 15(15일간)
2. 공고 내역 :

일련 번호	토지 표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반송 사유	반송 서류명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성명	생년월일	주소			
1	선장	군덕	109-3	대	787	정동현	580202-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0-2청구아파트105-601	폐문부재	개시결정서	공유자

2013 년                      06월                      28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공고 제 2013 - 938호

# 공 시 송 달

- 성 명 : 정미\* 외 184인
- 주 소 : 붙임 내역 참조
- 서류의 명칭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3년 07월 05일 ~ 07월 22일

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3년 07월 22일까지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041-540-2159)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발부받아 관내 은행 또는 전국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7월 05일

아 산 시



공고 제 2013 - 939호

#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 07. 02.

아 산 시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편입면적 (m <sup>2</sup> )	소 유 자
1 필 지		
아산시 온천동 30-90	13.0	최은숙
합 계	13.0	

○ 도로길이 : 13.28m

○ 도로너비 : 3.0m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아산시 공고 제 2013 - 949호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등 반송건 공시 송달 공고

귀하께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아산시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리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건축법 위반 고발조치 알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7. 03.

아 산 시



1. 제 목

-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1건
- 2)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 1건
- 3) 건축법 위반 고발조치 알림 : 1건
- 4)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 1건
- 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1건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4. 처분대상

대 상 지 주 소				위반내용	반송 사유	비고
연 번	이름	주소	주민(법인) 등록번호			
1	남궁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우암로 42	530831-1*****	무단신축	폐문부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2	김경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82, 604동 703호(불당동,대원칸타빌)	620825-2*****	무단조경훼손	폐문부재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3	유영숙	충남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14, 110동 1201호(풍기동,주은아파트)	680930-2*****	무단증축	폐문부재	건축법 위반 고발조치 알림

대 상 지 주 소				위반내용	반송 사유	비고
연 번	이름	주소	주민(법인) 등록번호			
4	이한구	충남 아산시 신인동 엘크루@ 101동 405호		무단신축	폐문부재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5	남궁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우암로 42	530831- 1*****	무단신축	폐문부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5. 공고기간 : 2013.07.03. ~ 2013.07.23. (20일간)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의 고지서 발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1-540-2856)

아산시 공고 제2013-955호

#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아 산 시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 **삼교천**, 및 **곡교천**

2. 대상구간

가. **삼교천** :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덕산천(지방)합류점 ~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삼교천 방조제의 외곽선)

나. **곡교천** : 아산시 신동 곡교천/온양천 합류점 ~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삼교천/곡교천 합류점

3. 공고기간 : 2013. 7. ~ 7. ( 15일 )

※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http://www.asan.go.kr)),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시도 게시판에 게재함.

4.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인주면 대음리 105-1번지의 187필지

5. 문 의 처 : 아산시청 재난안전과(하천관리팀 041-540-2497)

아산시 공고 제2013-956호

#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 월 일

아 산 시 장



- 1. 하 천 명 : 지방하천 **곡교천**(舊,지방1급하천)
- 2. 대상구간 :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천안시 시계) ~ 아산시 권곡동 온양천(지방)합류점
- 3. 공고기간 : 2013. 7. ~ 7. ( 15일 )
- ※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http://www.asan.go.kr)),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시도 게시판에 게재함.
- 4.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대상구간내 편입된 토지(염치읍 백암리 8-1번지의외 308필지)
- 5. 문 의 처 : 아산시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041-540-2497)